

3.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3
----------	-----

제출년월일 : 2003. 9.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제3동사무소 신축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지번이 변경되었기 동사무소명칭과 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창신제3동사무소 소재지를 “창신동 23-837번지”에서 “창신동 23-816 번지”로 변경

3. 개정근거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제2항

나. 관련지침 : 구청장방침 제920호(주택58511-2149, 2003.7.18)에 의한 “종로구 창신3동 23-816 외 2 필지 주택건설 사용검사 처리”

4.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동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와 관련한 별표의 창신제3동 동사무소 소재지란 중 “창신동 23-837”을 “창신동 23-81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 재 지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 관 할	구 분	동사무소 명 칭	동사무소 소 재 지	전지역 관할	일부지역 관 할
종 로 구	창 신 제 3 동	창신동 23-837	(생략)		종 로 구	창 신 제 3 동	창신동 23-816	(현행과 같음)	